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일시 : 2015년 4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설훈, 김태년, 도종환,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정진후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국회혁신교육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 행사 순서 및 자료집 순서

- | | | | | |
|---|-----------|--|--|-----|
| ○ | 개 회 사 | 설 훈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p |
| ○ | 축 사 | 문 재 인 |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 4p |
| ○ | 축 사 | 천 호 선 | 정의당 당대표 | 5p |
| ○ | 축 사 | 박 인 숙 |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
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공동대표 | 6p |
| ○ | 좌 장 | 정 진 후 | 국회의원 | |
| ○ | 기 조 발 제 | 경상남도 학교무상급식 중단 관련 현안보고 | | 8p |
| | | 박 종 훈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 |
| ○ | 주 제 발 표 1 |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성과 | | 14p |
| | | 장 경 호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 |
| ○ | 주 제 발 표 2 |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
의 필요성 | | 34p |
| | | 배 옥 병 | 사단법인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 |
| ○ | 토 론 1 | 김 미 선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 | 54p |
| ○ | 토 론 2 | 정 인 숙 | 前 부천 학교급식네트워크 운영위원 | 59p |
| ○ | 토 론 3 | 장 우 삼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 별첨 |

☞ 개 회 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설 훈

반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설훈입니다.

‘파국(破局)’

최근 며칠 새를 이보다 더 잘 드러내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스캔들을 보며 국민들께서는 “무능한데다 부패하기까지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권력실세’라 불리는 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보편적 급식’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반대운동을 펴는 학부모들에 대한 중북 몰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할 비용’으로 생각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오만함과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보편적 급식’은 단순한 급식비 지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준표 지사는 “학교는 공부 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지만, 학교에서의 식사와 관련된 활동 역시 교육의 일환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는 공부이자 교육인 것입니다. 즉, ‘보편적 급식’은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보편적 급식’ 논란은 누가 밥값을 낼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왜 교육공공성을 확대해야하는가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공공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고,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부와 권력이 대물림된다는 보고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되고, 잠재력을 가진 많은 청소년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하고 상처 입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과 가정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비극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많은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 양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년·안민석·유기홍·윤관석·정진후 의원님과 학교급식법개정과차별없는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국회혁신교육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문가, 학부모,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서로의 견해를 경청하고 공감대를 이뤘으면 합니다. 저 역시 지금의 '보편적 급식' 논란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보편적 교육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당의 설훈 의원과 김태년·도종환·안민석·유기홍·유은혜·윤관석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를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임입니다.

의무교육 기간에 이뤄지는 급식 또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많은 학부모들의 여론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제 안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조차 무상급식을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으로 여기며 심지어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결정임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결정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학부모와 아이들은 또다시 가난인증을 해야 하고, 가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한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학교 급식의 국가적 책임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하여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거·교육·보육·의료·통신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역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 축사

정의당 당대표 천호선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개최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 경남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정의당을 비롯해 복지국가 건설에 노력해 온 야권정당과 복지시민단체 여러분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지 홍준표 지사 한 사람의 권력욕 때문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복지제도 하나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민주주의가 한번 성취되면 언제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복지 역시 그런 자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남 학부모님들이 커다란 목소리를 내 주셨고, 적어도 아이들 밥 가지고는 정치하지 말라는 큰 공감대가 생기면서,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또한 멀지 않아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을 일소하고 지자체에만 그 부담을 떠넘기는 현행 제도를 바로 잡을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정을 추진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의무교육은 무상이고, 따라서 교육의 일환인 급식 또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우리당 정진후 의원님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께서도 전력을 다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올해 강령을 개정하면서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당의 분명한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그냥 다가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담뱃세 논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등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얻어,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길을 모색 중입니다. 정의당은 그 과정에서 조세정의라는 원칙, 시민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주체라는 원칙, 사회적 합의라는 원칙,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한 정치라는 원칙을 지켜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처럼 아이들과 학부모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긴급토론회가 교육현장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권의 책임있는 약속도 함께 이뤄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축사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공동대표 박인숙

“급식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무상급식은 계속되어야 한다” “의무교육! 의무급식!”
“밥상머리 교육 평생간다”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 밥 좀 먹이자”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는다”
“급식도 교육이다 무상급식 살려내라”
“무상급식 중단되면 급식질 떨어지고 농산물 소비 줄어든다”
“어른이 바르게 살아야 아이들도 잘산다” “홍준표 감옥가서 돈내고 밥먹어라”
“국가 의무에 부자 가난 구별없다. 의무급식 실시하라”
“경남만 유상급식 개천에서 욕 나온다” “세금은 내가내고 갑질은 니가하냐”
“차별없는 밥상 의무급식 실현하라”.....

<경남 무상급식 중단 신문기사에 등장한 피켓 구호 인용>

2007년 경남 거창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경남에서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8년 만에 무상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위의 구호에서와 같이 현재 경남의 학부모와 도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대권 욕심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행복한 밥상을 빼앗겼습니다. 역사적 퇴행이며, 부끄러운 좁쌀 정치의 결과입니다.

친환경의무·무상급식은 한국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03년 주민발의 조례 운동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획을 그었고, 우리농산물 사용을 비롯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문제를 학교 담장을 넘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로 발전시켜 냈습니다.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해내면서 학교급식은 밥장사가 아니라 교육으로 분명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과정을 거쳐 공공적인 학교급식 체계를 마련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오늘의 친환경의무·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의무·무상급식은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합의 속에서 차근차근 교육과 보편적 복지의 담론을 형성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이

렇기 때문에 쉽게 후퇴될 수 없으며, 무모하게 후퇴시키려던 오세훈 전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끝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의무·무상급식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낙인효과를 없애는 인권적 차원은 물론 교육과 복지를 뛰어 넘어 실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여 시민생활을 지원했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사회·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경남에서도 8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던 친환경의무·무상급식은 어느 날 갑자기 홍준표 지사에 의해 중단됐고, 현재 경남의 학교현장과 농업 등 관련 삶터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미 전체 학생의 70% 가까이 친환경의무·무상급식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한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책임하게 떠넘긴 것은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또한 2012년 발의된 학교급식법을 잠재워 둔 국회에도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방안을 포함하여 발전적인 개정안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경남 홍준표 지사와 같은 단체장의 의지 변화에 따라 학교급식이 휘청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책무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시급합니다.

오늘 긴급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주최해 주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태년 상임위 간사, 도종환·안민석·유기홍·유은혜·윤관석·정진후 국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회혁신교육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여 발표해 주시는 모든 분과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급식은 교육”임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 경남에서 친환경의무·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되길 바랍니다. 기필코 이번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눈칫밥 없는 행복한 밥상이 마련되길 촉구합니다.

경상남도 학교 무상급식 중단 관련 현황보고

박 중 훈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

학교 무상급식 중단 경과

2007년 거창군 시작, 2010년까지 시·군청이 주도적 추진

※ 시·군 자치단체 추진 현황

- 2007 거창(면지역 초·중·고)
- 2008 남해(초), 거창(초, 면지역 중·고)
- 2009 창녕·고성(초), 함안(초·중), 거창(초·중, 면지역 고)
의령·남해·하동·합천(초·중·고)
- 2010 통영(초), 함안·산청·창녕·고성·함양(초·중)
의령·남해·하동·거창·합천(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중단 경과

2007~2010

시·군 자치단체 주도적 추진

2010.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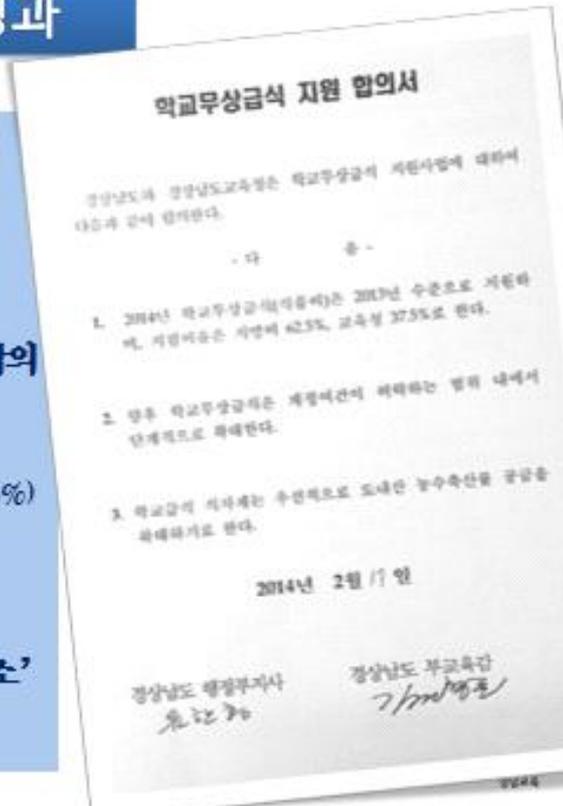
교육청(식종비 30%) - 도청(식종비 70%)
'2011~2014년 무상급식 추진' 합의

2014. 2. 17.

교육청(식종비 37.5%) - 도청(식종비 62.5%)
'무상급식 추진' 합의문 작성

2014. 10. 15.

경남도청 '2015년 지방비 50% 축소'
공문 일방통보



학교 무상급식 중단 경과

2014. 10. 21. 도청 '학교 무상급식 특정감사 계획' 언론보도

2014. 10. 30. 교육청 감사원에 '자체 감사활동 지원' 요청

2014. 11. 3. 도청 '감사 없는 예산 없다' 도지사 입장 표명

2014. 11. 11. 교육청 '2015. 예산안' 도의회 제출
식종비 87.5% 편성(교육비 37.5% + 지방비 50%)

2014. 12. 1. ~ 5. 도의회 예결특위 종합 심사
도비 전입금 257억원 삭감, 17개 세출사업 257억원 조정

2014. 12. 8. 도의회 2015. 예산안 통과
도청 예산: 예비비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

학교 무상급식 중단 경과

- 2015. 2.26. **도의회** 경상남도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도의원 40명 발의
- 2015. 3.19. **도의회** 경상남도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통과**
- 2015. 3. **거제시의회** 거제시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발의단계 **보류**
- 2015. 3.23. **김해시의회** 김해시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보류**
- 2015. 4.15. **통영시의회** 통영시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보류**
- 2015. 4.20. **진주시의회** 진주시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상임위 **부결**



학교·학부모·시민사회의 대응



학교·학부모·시민사회의 대응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진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교육청 사업과 중복

무상급식 지원비 643억,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편성

경남도청 사업		경남교육청 사업	
사업명	예산(백만원)	(유사중복) 사업명	예산(백만원)
바우처 사업	41,786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등 12개 사업	220,303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15,85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9개 사업	25,762
교육여건개선사업	6,61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77,028
계	64,250	계	323,093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문제

- 교육청 교육복지 정책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른 도민 혈세 낭비
- 가정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업
-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

전망과 과제



- **학부모들의 반발**
 - 지역별 자발적 학부모 모임 - 밴드
- **시-군의회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 주춤**
 - 미상정 - 창원 사전 밀양 거제 함안 하동 거창
 - 심의 보류 - 김해 합천
 - 부결 - 진주
-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
 - 선별적 급식은 안된다
 - 내년 총선과의 연계 가능성 모색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귀결**
 - 안정적 급식 재원의 확보



전망과 과제



급식은 교육이다

- 헌법 정신(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밥상머리 교육(급식은 복지가 아니고 교육이다)
- 누리 과정과의 형평성의 문제
- 학교의 혼란과 교육적 손실
-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 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 - 학교 급식법 개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성과

장 경 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1. 들어가며

-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는데, 그 밑바탕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됨
- 2011년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지침 변경 및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농약급식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폭넓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등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친환경 무상급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서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 및 학교급식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음
- 이 글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그동안 일구어냈던 성과와 친환경 무상급식이 담고 있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폐기되거나 축소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야 할 미래지향적 정책이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개과정

1) 무상급식의 양적 확대

-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2011년부터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는데, 2010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체 초·중·고 학교의 23.7%인 2,657개교였으나 2014년에는 72.7%인 8,351개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94.1%, 중학교의 경우 76.3%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음
- 2015년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가 7,805개교, 67.4%로 나타나 작년에 비해 5.3%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남도의 재정 지원 중단으로 인해 727개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되었기 때문임
-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학교급식비 지원 학생이 약 4,627천 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약 4,149천 명으로 9%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였음. 올해 경남은 약 447천 명의 학생 가운데 66천 명에 대해서만 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

연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개)	무상급식 학교수 (개)	비율 (%)	전체 학교수 (개)	무상급식 학교수 (개)	비율 (%)	전체 학교수 (개)	무상급식 학교수 (개)	비율 (%)	전체 학교수 (개)	무상급식 학교수 (개)	비율 (%)
2009	5,852	1,427	24.4	3,110	304	9.8	2,234	81	3.6	11,196	1,812	16.2
2010	5,845	2,123	36.3	3,128	427	13.7	2,255	107	4.7	11,228	2,657	23.7
2011	5,893	4,703	79.8	3,150	803	25.5	2,286	205	9.0	11,329	5,711	50.4
2013	5,942	5,622	94.6	3,180	2,393	75.3	2,326	300	12.9	11,448	8,315	72.6
2014	5,960	5,607	94.1	3,190	2,433	76.3	2,333	311	13.3	11,483	8,351	72.7
2015	6,009	5,247	87.3	3,212	2,320	72.2	2,352	238	10.1	11,573	7,805	67.4

※ 자료 : 김춘진 의원(2015.3.2.)

표 2. 2015년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계획(안)

(교육부 2015.1월 조사, 2015년도 본예산 기준, 천명, 억원)

시도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수	지 원 학생수	재원부담		
				교육청	지자체 (광역단체)	계
서울	공립초, 중학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1,066	762 (71.5%)	3,247	2,341 (1,431)	5,588
부산	공립초 및 기장군 중학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80%이하)	367	215 (58.6%)	793	328 (306)	1,121
대구	400명이하 및 면지역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초·중 340%이하, 고 260%이하)	307	141 (45.9%)	469	162 (162)	631
인천	초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350	194 (55.4%)	615	426 (243)	1,041
광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219	165 (75.3%)	673	427 (376)	1,100
대전	초 1~6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209	113 (54.1%)	193	317 (238)	510
울산	울주군 초, 도시소규모 초, 면지역 중, 동·북구 초 5,6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350% 이하)	153	58 (37.9%)	213	60 (25)	273
세종	초·중학교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저소득층+다자녀가정학생	35	30 (85.7%)	119	109 (0)	228
경기	초·중 전체 무상급식 + 고등학교 저소득층	1,635	1,267 (77.5%)	3,932	3,069 (237)	7,001
강원	초·중 전체 및 고(특성화고, 소규모고) + 저소득층, 셋째이상자녀	188	153 (81.4%)	869	360 (180)	1,229
충북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199	153 (76.9%)	534	456 (182)	990
충남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259	201 (77.6%)	562	763 (305)	1,325
전북	초·중 전체 및 읍이하 고 무상급식 + 저소득층(130%이하)+정읍시 고등학교	236	201 (85.2%)	651	394 (176)	1,045
전남	초·중 전체 및 읍 이하 고 무상급식(광양시 동지역 고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231	199 (86.1%)	922	570 (278)	1,492
경북	100명미만 초 및 읍면이하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40%이하)	302	164 (54.3%)	476	299 (49)	775
경남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447	66 (14.8%)	505	0 (0)	505
제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고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83	67 (80.7%)	201	164 (164)	365
합 계		6,286	4,149 (66.0%)	14,974 (59.4%)	10,245 (4,352) (40.6%)	25,219 (100%)

※ 자료 : 교육부

※ 무상급식 학생수 : 저소득층자녀 + 일반학생 포함

※ 급식비(인건비,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한 인원과 예산은 제외

2) 친환경급식으로의 질적 발전

- 학교급식에서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친환경급식으로 전환되는 질적 발전도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친환경 식재료의 조달이 빠르게 증가되었음
-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 확대로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이 향상되었는데, 쌀의 경우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음.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에 자치구가 산지와 계약을 통해 무농약 이상 쌀을 제공하고 있음
- 채소류와 과일류를 비롯한 농산물의 경우에도 친환경 농산물의 식재료 공급이 무상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고, 축산물 역시 무항생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식재료 공급이 증가하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방사능을 포함하여 안전성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수산물을 공급하는 지역도 확대되고 있음
- 원재료와 첨가물 등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품질기준을 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가공식품만 학교에 식재료로 공급되는 경우도 확대되어 왔음.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 20~25개 품목에 대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공식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2011~2012년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현재는 25개 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 방식을 시행하고 있음.(표 3. 참조)
- 이와 같은 친환경급식으로의 질적 발전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비롯한 공적 조달체계의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공적 조달체계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한 시중 조달 방식에 비해 안전성 및 품질 관리에 장점이 있고,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적 조달체계의 확대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품질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음.

표 3. 경기도교육청 가공식품 공동구매 품목과 품질기준

대상품목	국간장 고추장 된장 진간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볶음참깨 들깨가루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소면 감자전분 당면 쌀조청 고춧가루 소금 매실(농축액) 현미유 설탕 토마토케첩 스위트콘 ※ 이 가운데 지역별로 20~25개 품목을 선정하여 공동구매
품질기준	<p><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와 부재료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 우선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가격 유지가 어렵거나 생산량 부족시 국내산으로 대체 - 국내생산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 허용 • 식품첨가물 사용 원칙적으로 금지 • 유전자변형농작물 및 유전자변형 식품 금지 (Non-GMO) <p>※ 기본원칙과 아울러 품목별 세부 품질기준 별도 제시</p> <p>※ 안전성 확인을 위해 품목제조보고서, 친환경인증서, 원산지증명서, GMO검사결과, 각종 이화학(잔류농약, 중금속 등) 검사결과 등 제출</p>

3) 사회적 자본의 축적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공적 조달체계의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지역먹거리체계(로컬푸드시스템, local food system) 도입 및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초기에는 생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었고, 그 이후에 직매장, 농민장터(farmer's market), 꾸러미 등과 같은 로컬푸드의 실험적 사례들이 도입되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 여기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공적 조달체계가 도입,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및 로컬푸드시스템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42개의 광역 및 기초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적 자본, 시설 인프라, 조직 및 기구, 예산 및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산—유통•물류—가공—소비 체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급식

영역으로까지 공적 조달체계가 확장될 경우 생협과 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로컬푸드가 연계되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태계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아래 <표 4>에서 제시된 급식인원을 기준으로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식재료 수요량을 계산하면 대략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약 17~20%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자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4. 급식유형별 단체급식 이용자수 추정(2010년)

급식 유형	1일 1끼 급식대상자(천명)	급식끼니	특기사항
계	13,901		
보육시설	1,280	1식, 간식	종일반은 2식 제공
유치원	539	1식, 간식	
초·중·고	7,179	1식	연 180일, 기숙사 학교는 2~3식 제공
사업체	3,430	1식	
병원	285	3식	
사회복지 시설	저소득층 아동 돌봄센터	151	1식
	사회복지 생활시설	166	3식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관)	104	1식
군대	687	3식	
교정시설	80	3식	

※ 자료 : 김혜련(2012)에서 인용

표 5. 서울 공공급식의 유형 및 규모 추산

유형구분	1일 식수(명)	급식학생수 대비
공공기관	35,789	3.2%
어린이집	53,601	4.8%
어르신급식	11,127	1.0%
아동급식	9,479	0.9%
아동·어르신 도시락	10,775	1.0%
시립병원	5,440	0.5%
합 계	126,211	11.4%
서울 급식학생수	1,105,395	-

※ 공공기관은 2008년 기준으로 추산, 나머지 항목은 모두 2014년 기준으로 추산

※ 자료 : 한국사회학회,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성과평가와 발전전략 연구(2014)

표 6. 서울 공공급식 1인당 식재료 소요량 추정치

구 분	성인		아동	
	1년 소요량(kg)	1식 소요량(g)	1년 소요량(kg)	1식 소요량(g)
쌀	19.6	108.8	9.3	51.7
농산물	24.4	135.6	17.2	95.3
축산물	11.3	62.6	5.5	30.5
수산물	3.4	18.8	2.5	13.6
가공식품	46.7	259.6	45.7	254.1
합 계	85.8	476.5	70.8	393.6

※ 자료 : 한국사회학회,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성과평가와 발전전략 연구(2014)

표 7. 서울 공공급식의 유형 및 규모 추산

유형구분	1일 식수(명)	급식학생수 대비
공공기관	35,789	3.2%
어린이집	53,601	4.8%
어르신급식	11,127	1.0%
아동급식	9,479	0.9%
아동·어르신 도시락	10,775	1.0%
시립병원	5,440	0.5%
합 계	126,211	11.4%
서울 급식학생수	1,105,395	-

※ 자료 : 한국사회학회,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성과평가와 발전전략 연구(2014)

3.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

1)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안정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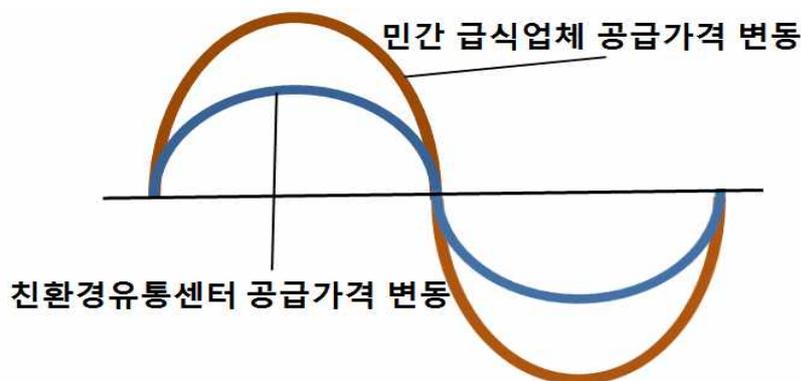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후 공적 조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는데, 공적 조달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관리 수준을 향상시킨 것임
- 공적 조달체계를 통해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사전 안전성 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후 검사에만 의존하는 시중 조달에 비해 안전성 관리에 장점이 있음. 시중 조달의 경우 사후 샘플링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량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고, 문제 발생 이후 사후조치만 가능함

표 8. 학교급식 식재료 공적 조달체계의 장점

구 분		공적 조달	시중 조달
안전성 관리	사전 검사	가 능	불가능
	사후 검사	가 능	가 능
안정성 유지	품목	안정적	불안정
	품질(품위)	안정적	불안정
	물량	안정적	신축적
	가격	안정적	신축적

- 공적 조달체계는 시중 조달 방식에 비해 식재료 공급 물량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가격의 불안정을 완화시켜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음
- 시중 조달의 경우 식재료 공급 물량 및 가격 측면에서 안정적 유지가 곤란함. 예를 들면 감자가 흉작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민간 급식업체는 공급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는 품위가 낮은 감자를 구매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서 식단의 안정적 유지가 곤란함. 이처럼 농축산물의 가격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농축산물 대신에 가공식품의 구매비율을 높이게 되는데, 이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학교급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공적 조달체계의 경우 산지와 연계를 통해 식재료의 공급 물량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공급가격의 변동 역시 시중가격 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농축산물의 특성상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하고, 특히 학교에서는 가격 변동을 예측한 식단 구성 및 구매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정해진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공적 조달체계가 장점을 갖고 있음

그림 1. 공적 조달체계의 가격 안정성 비교



2)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학생의 기본인권 보장

-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되었던 저소득층 대상 급식비 지원은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유발하였는데,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학생에게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고 차별을 내면화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인권을 훼손하는 것임
- 차별 없는 교육복지의 일환으로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현장에서 낙인효과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생들의 기본인권을 보호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은 차별과 낙인 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함양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만드는데 기여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함
-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먹거리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급식정책에 관한 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와 유사하며, 먹거리 기본권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임
-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된 이후 급식과 교육을 연계한 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에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 생태, 문화 등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도 교육의 일부로 정착되고 있음

3) 학부모의 부담경감에 따른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제적 효과

- 무상급식은 급식비를 공적 재원으로 부담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왔는데, 특히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하위계층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효과를 가져다주었음
- 무상급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거시경제적 승수효과, 소득재분배의 효과, 지역경제의 순환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① 거시경제적 승수효과

- 급식비 부담이 줄어든 가계는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데, 일반적인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정부 재정지출(G) 증가함으로써 가계 소비(C), 기업 투자(I), 고용 및 노동소득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총생산 및 총소득(Y)을 증가시키게 됨

$$Y = C + I + G + X - M$$

- 급식비 지원과 같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총생산 및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인데, 정부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는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에 의해 결정됨.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급식비 지원으로 인한 총생산 및 총소득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남

$$\text{승수효과} = 1 / (1 - \alpha) \quad (\alpha : \text{한계소비성향})$$

- 우리나라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을 계측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소비성향을 통해 가늠해 볼 수는 있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2012~2014)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약 73.5%로 나타남.(이는 1,000천원의 소득 가운데 평균 735천원을 소비로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를 대입하여 승수효과를 계산하면 약 3.8배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적 재원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급식지원비의 약 3.8배 정도 총생산 및 총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한계소비성향은 이 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승수효과는 이 보다 낮은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공적 재원으로 학교급식비 지원한 총액은 2조 6,3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작년 보다 소폭 감소한 2조 5,21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② 소득재분배의 효과

-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을 추가로 세금을 더 거두어서 충당할 경우 누진세 제도로 인해 무상급식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무상급식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 일부가 중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함

표 10. 무상급식의 소득재분배 효과

단위 : 천원

소득분위	가처분소득	보조(=급식비)	조세	순보조
1	4,295	400	1.78	398.22
2	10,197	400	18.65	381.35
3	16,014	400	49.75	350.26
4	21,661	400	111.33	288.67
5	26,786	400	164.33	235.67
6	32,272	400	228.59	171.41
7	38,356	400	338.74	61.26
8	46,046	400	463.10	- 63.10
9	56,741	400	741.43	- 341.43
10	85,870	400	1,882.30	- 1,482.30
계		4,000	4,000	0

※ 자료 : 안현효(2010) / 전강수 외,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 교육 및 복지정책에 끼친 효과 분석(2013)에서 재인용

- 안현효(2010)에 의하면 증세를 통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소득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순보조를 받는 반면, 8분위 이상은 순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소득 7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조세 부담액 보다 급식비 지원액이 더 크기 때문에 순보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임
- 한편, 위와 같은 소득재분배는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승수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8분위 이상에서는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되고, 7분위 이하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거시경제 승수효과가 발생하게 됨
-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득재분배로 고소득층의 소비 감소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고, 이 때문에 거시경제 전체로는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승수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임
- 위 안현효(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3조원 규모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득재분배로 인한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국민소득(Y)이 약 4,13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 지역경제 순환의 효과

-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역먹거리체계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경우 지역경제의 순환에 따른 승수효과가 발생함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가공-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원의 외부유출을 감소시키고, 지역내 순환을 증가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데, 지역경제의 순환으로 지역내 소비, 투자, 고용 등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함
- 지역경제의 순환에 따른 지역내 총생산 및 총소득이 증가하는 승수효과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로컬푸드의 승수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함. 로컬푸드의 지역경제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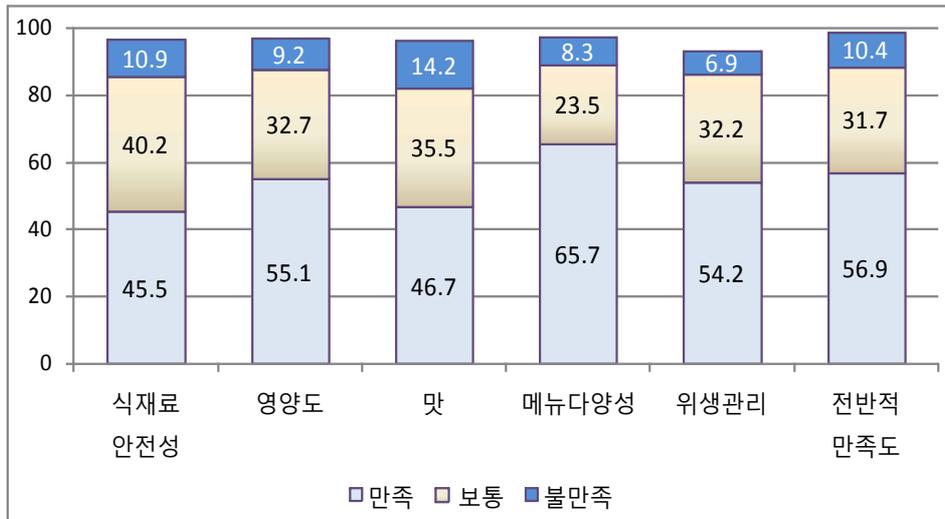
4)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

-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제적 효과와 같은 정량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 등과 같은 정성적 성과도 주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조사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및 중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¹⁾
-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적 답변이 56.9%로 불만족이라는 응답 10.4%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중립적 답변이 31.7%로 나타났음
- 세부 계층별로는 전반적으로 30대 이하의 젊은층,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의 계층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1) 한국사회학회,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평가와 발전전략 연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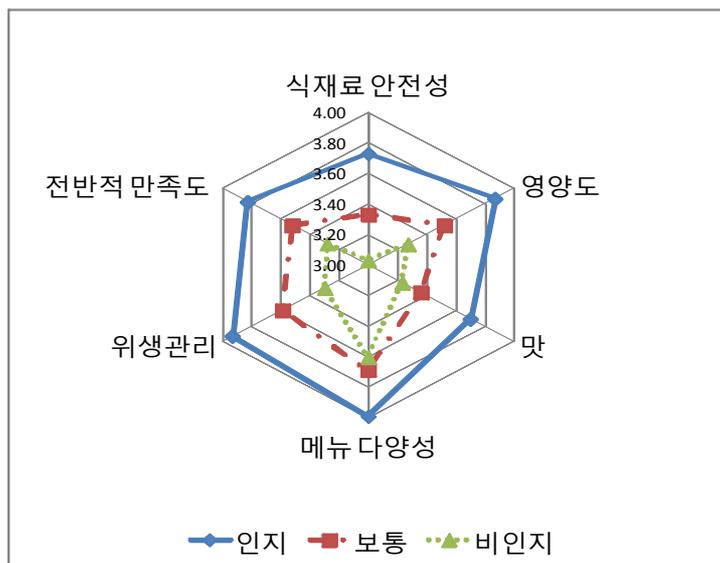
그림 2. 학부모의 전반적 만족도 및 항목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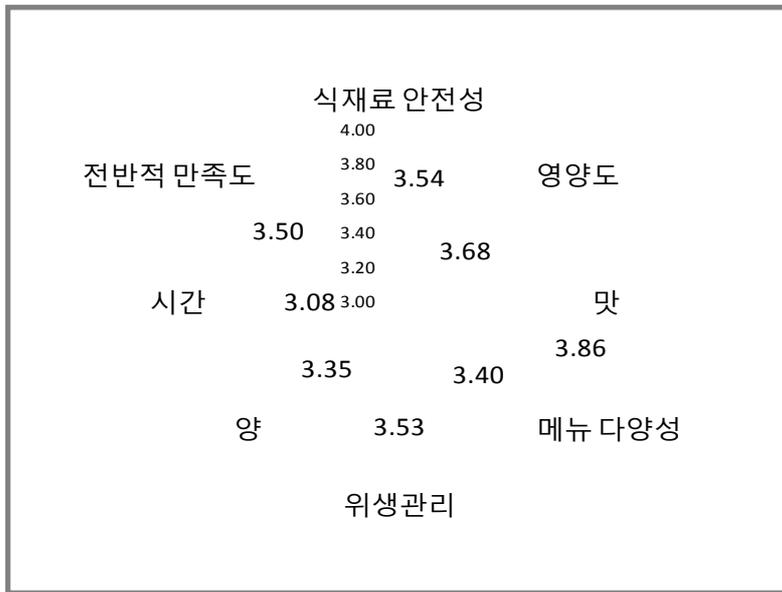
- 아울러 아래 <그림 3>과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수록, 학교급식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 평가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 급식 인지 수준별 만족도



-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 만족도 평균이 3.5점이며, 항목별로는 맛(3.86점), 영양도(3.68점), 식재료 안전성(3.54점)의 순으로 높음. 평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시간 (3.08점)이며 다음으로 양이 낮은 점수를 보임(3.35점).

그림 4. 중학생의 전반적 만족도 및 항목별 만족도 평균



- 중학생의 경우 학교 및 가정에서 식생활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정에서 식생활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맛과 영양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5. 학교에서 안전한 먹거리 교육경험 여부와 급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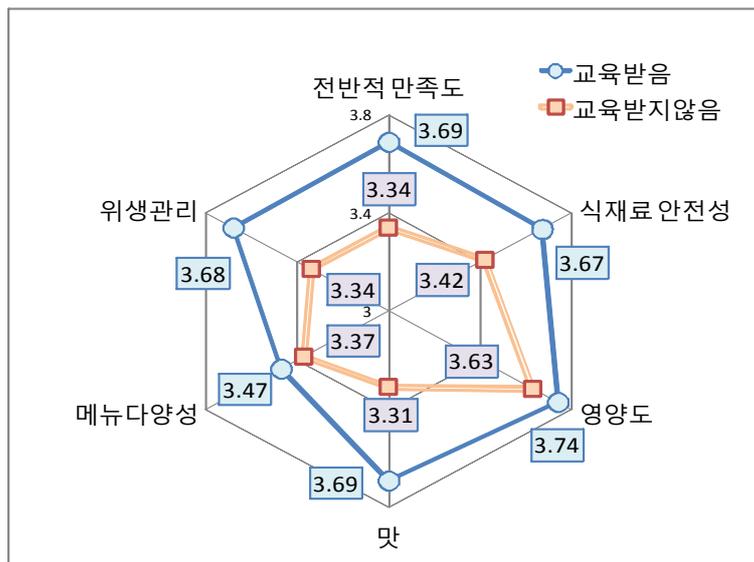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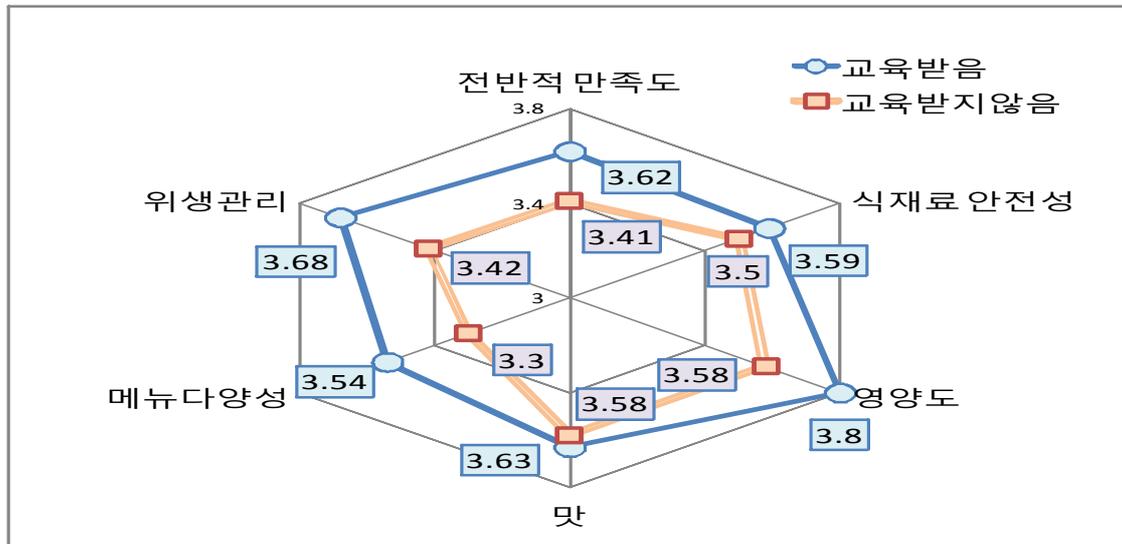


그림 6. 가정에서 먹거리 교육경험 여부와 급식 만족도



○ 그리고 햄버거, 라면, 삼각김밥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학생일수록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과일을 자주 먹는 학생일수록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1. 햄버거, 라면, 떡볶이, 삼각김밥, 과일의 먹는 정도별 급식 만족도

		메뉴 다양성		양		맛		영양	
		평균	F검증	평균	F검증	평균	F검증	평균	F검증
햄버거	자주	3.31	4.85	3.20	3.86	3.46	2.51	3.59	1.55
	가끔	3.42	**	3.42	*	3.50	n.s	3.71	n.s
	드물게	3.42		3.30		3.47		3.69	
라면	자주	3.17	4.85	3.29	1.45	3.45	2.51	3.52	1.55
	가끔	3.33	**	3.22	n.s	3.39	n.s	3.55	n.s
	드물게	3.57		3.51		3.60		3.75	
떡볶이	자주	3.41	.72	3.23	1.44	3.37	1.28	3.57	1.90
	가끔	3.44	n.s	3.42	n.s	3.52	n.s	3.75	n.s
	드물게	3.29		3.31		3.54		3.66	
삼각김밥	자주	3.16	4.20	3.08	4.56	3.39	.72	3.41	6.78
	가끔	3.45	*	3.41	*	3.53	n.s	3.80	**
	드물게	3.50		3.45		3.49		3.63	
과일	자주	3.47	2.94	3.42	2.23	3.47	.94	3.74	2.72
	가끔	3.43	*	3.34	n.s	3.58	n.s	3.69	*
	드물게	3.17		3.14		3.40		3.48	

		전반적 만족도		식자재 안전성		위생관리	
		평균	F검증	평균	F검증	평균	F검증
햄버거	자주	3.31	2.16	3.33	.67	2.49	.87
	가끔	3.58		3.52		3.59	
	드물게	3.47	n.s	3.53	n.s	3.44	n.s
라면	자주	3.29	2.15	3.44	.67	3.42	.87
	가끔	3.52		3.51		3.42	
	드물게	3.56	n.s	3.61	n.s	3.58	n.s
떡볶이	자주	3.44	.94	3.37	2.56	3.52	.30
	가끔	3.56		3.62		3.54	
	드물게	3.45	n.s	3.62	n.s	3.51	n.s
삼각 김밥	자주	3.28	4.79	3.43	.79	3.41	1.50
	가끔	3.61		3.60		3.59	
	드물게	3.54	**	3.55	n.s	3.55	n.s
과일	자주	3.54	4.67	3.74	1.16	3.51	.59
	가끔	3.62		3.69		3.60	
	드물게	3.25	**	3.48	n.s	3.48	n.s

4.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

1)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 보장에 크게 기여

- 2004년 유엔(UN/FAO)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원국에게 권고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UN/HRC)도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천명하였음
- 소득의 양극화가 먹거리 양극화를 유발하여 건강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든지 안전한 먹거리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먹거리 기본권의 주요 내용임
-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급식정책에 관한 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이라는 상위의 개념으로 수렴되고 있음

표 9. 급식정책에 관한 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

결핍에서 균형으로	영양 결핍에 대한 대응에서 탈피하여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영양의 균형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음
시장에서 공공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조달에서 탈피하여 급식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적 조달로 변화하고 있음
자선(구호)에서 교육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보편적인 교육과 급식의 연계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개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급식정책에 관한 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와 같은 맥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소한 학교에서 먹는 한끼의 급식만이라도 학생들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도 부합하는 것임

2)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대에 큰 역할

- 유엔은 2014년을 세계 중소 가족농업의 해로 선정했고, 올해를 세계 흙의 해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모두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가 확대되는 것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산—유통•물류—가공—소비 체계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로컬푸드가 확산되는 것에는 학교급식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전국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로컬푸드는 학교급식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고 있음
-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공적 조달체계가 확대되면서 인적 자원, 시설 인프라, 조직 및 기구, 예산 및 제도 등과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로컬푸드와 같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7. 사례 1 - 완주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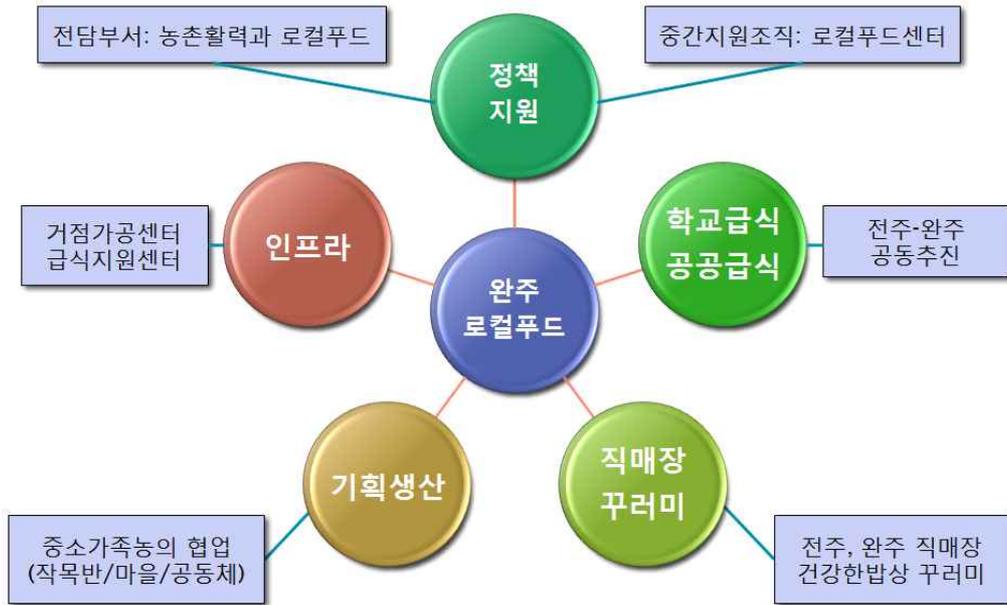


그림 8. 사례 2 - 옥천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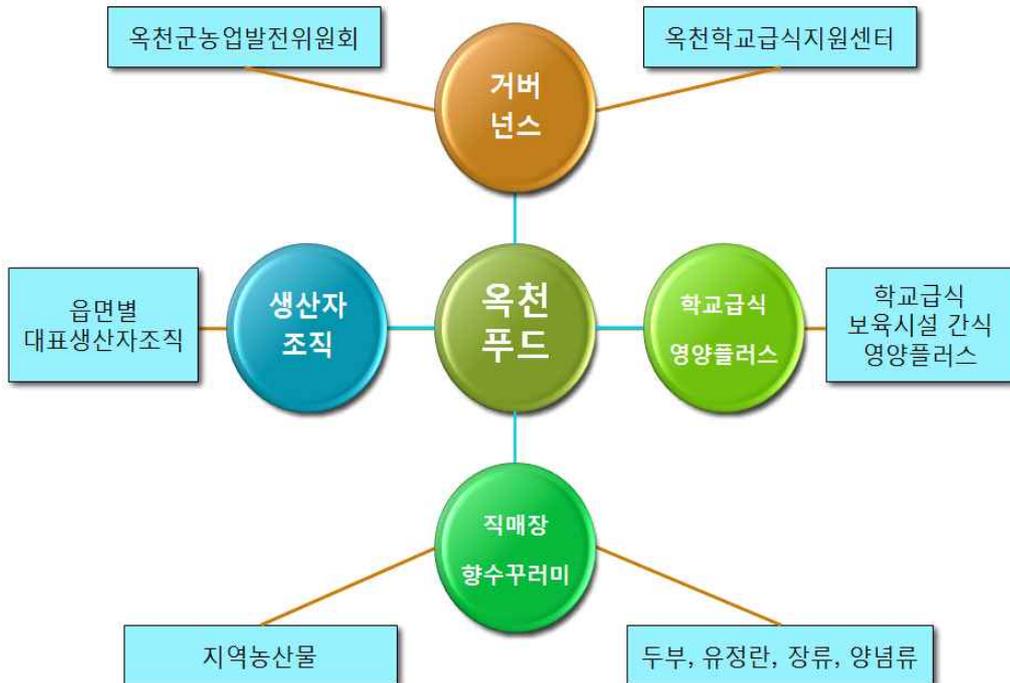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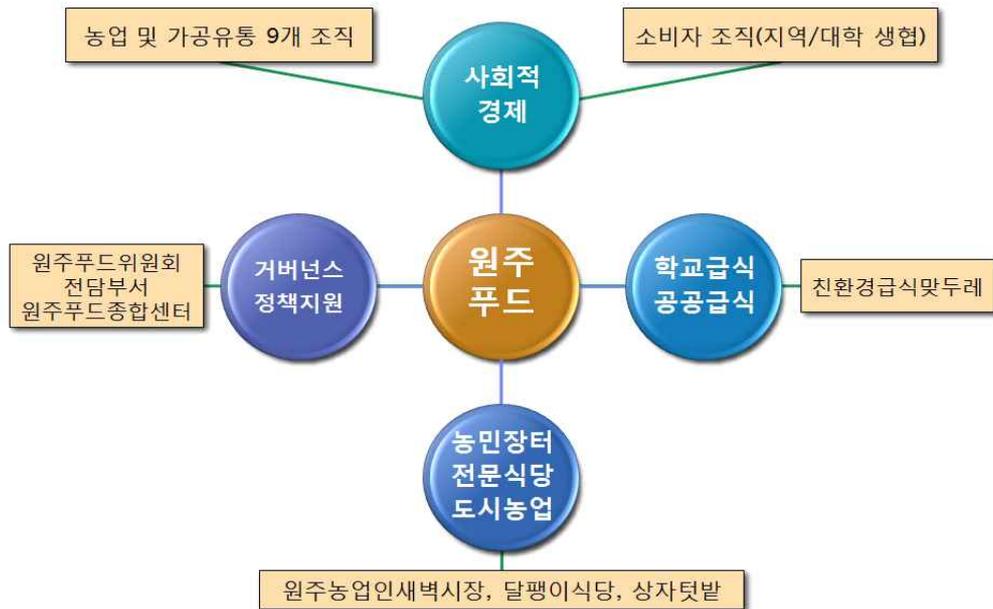


그림 9. 사례 3 - 원주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3)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

- 복지 체계의 시각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논쟁은 사회서비스 복지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은 종래의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보편적 복지의 담론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복지이면서 동시에 의무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음
-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도입 및 확산은 선별적 복지라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 담론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과 확대할 수 있다는 실현가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음.
-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시혜’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공동체의 ‘권리’라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또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세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 및 누진적 조세부담의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음

- 비록 아직까지는 ‘선거용’이라는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복지 및 조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향적 변화는 정치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복지와 조세에 관한 전향적인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5. 결론에 대신하여

- 올해 초 일부에서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경남도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 친환경 무상급식의 축소 및 중단을 위해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는 일부의 행태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이며,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단 혹은 축소는 다음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적 학교급식비 지원은 낙인효과를 유발하여 학생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줄 것이며, 학생의 기본인권을 저하시키게 될 것임
 - 친환경 무상급식의 거시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과 같은 정량적 효과도 감소하게 될 것임
 - 친환경 무상급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축소되면서 사회 전반의 소득 양극화, 먹거리 양극화, 건강 불평등은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
 - 공적 조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면서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공적 조달체계 구축에 투입된 인적 자원, 시설 인프라, 조직 및 기구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손실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
 - 친환경 무상급식의 축소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친환경 생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임
 - 친환경 무상급식의 축소는 먹거리 기본권의 후퇴를 초래함으로써 먹거리에 관한 세계사적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 현재 시점에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 부담의 문제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와 의미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접근방법임
-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새로운 재원의 확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포함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주제발표 2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

배 옥 병

(사단법인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1. 학교급식 현황(2013학년도말 기준)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1,575개교에서 100% 급식 실시
 - 급식학교 : ('10) 11,389개교 → ('11) 11,476개교 → ('12) 11,520개교
- 전체 학생 652만명 중 99.5%인 648만명이 학교급식 이용
 - 급식학생 : ('10) 718만명 → ('11) 697만명 → ('12) 671만명
- 급식방식은 직영급식 97.7%(11,313개교), 위탁급식 2.3%(262개교)
 - 위탁급식 : 일부위탁 172개교, 전부위탁 37개교, 외부운반 53개교

《학교급식 실시현황》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5,917	5,917	100	2,791	2,784	99.7	5,915(99.9)	2(0.1)
중 학교	3,172	3,172	100	1,802	1,797	99.7	3,135(98.8)	37(1.2)
고등학교	2,323	2,323	100	1,899	1,877	98.8	2,103(90.5)	220(9.5)
특수학교	163	163	100	25	24	97.8	160(98.2)	3(1.8)
계	11,575	11,575	100	6,517	6,482	99.5	11,313(97.7)	262(2.3)

※ 위탁급식 : ('06) 15.4%(1,655교) → ('08) 11.5%(1,279교) → ('10) 5.4%(619교)

2. 학교급식 소요경비

- 2013년도 연간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총 5조 6,502억원 규모
 - ('07) 4조1,973억원 → ('10) 4조8,631억원 → ('12) 5조3,025억원
- 재원은 보호자 31.5%, 지방비 66.3%, 발전기금 2.2% 등으로 부담

《학교급식 소요경비 현황》

재원부담 주 체 별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보호자부담	발전기금 등	계
	2조6,828억원 (47.5%)	1조 636억원 (18.8%)	1조7,818억원 (31.5%)	1,220억원 (2.2%)	5조6,502억원 (100%)
집 행 항 목 별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등	계
	4,185억원 (7.4%)	1조5,640억원 (27.7%)	3조2,228억원 (57.0%)	4,449억원 (7.9%)	5조6,502억원 (100%)

※ 보호자 부담비율 : ('10) 60.8% → ('11) 48.3% → ('12) 36.8%

3. 급식종사자 현황

- 총 72,923명 : 영양(교)사 9,812명, 조리사 9,943명, 조리원 53,168명
- 신분은 정규직 10.2%(7,415명), 학교회계직 등 89.8%(65,508명)

《학교급식종사자 배치현황》

구분	급식 학교수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계		
		정규직	회계직등	정규직	회계직등	정규직	회계직등	정규직	회계직등	계
초등학교	5,917	3,558	1,383	1,896	3,525	30	23,705	5,484	28,613	34,097
중 학교	3,172	568	1,728	84	2,051	0	12,906	652	16,685	17,337
고등학교	2,323	621	1,811	245	1,992	143	16,044	1,009	19,847	20,856
특수학교	163	122	21	109	41	39	301	270	363	633
계	11,575	4,869	4,943	2,334	7,609	212	52,956	7,415	65,508	72,923

※ 영양교사 : 4,704명(47.9%) 배치(국립 30명, 공립 4,516명, 사립 153명)

4. 배식장소 현황

- 식당배식¹⁾ 80.3%, 식당+교실배식 5.0%, 교실배식 14.7%

《학교급식 배식장소 현황, '13.9월》

구분	배식 장소별 학교수(%)			
	식당배식	식당+교실	교실배식	계
초등학교	4,525(76.3)	359(6.1)	1,046(17.6)	5,930(100)
중 학교	2,633(83.8)	88(2.8)	422(13.4)	3,143(100)
고등학교	2,169(93.9)	63(2.7)	79(3.4)	2,311(100)
특수학교	136(86.1)	15(9.5)	7(4.4)	158(100)
계	9,463(82.0)	525(4.5)	1,554(13.5)	11,542(100)

* 교실배식 학교수 비율 : ('07) 23.7% → ('09) 19.0% → ('11) 16.1%

1) 일본의 경우 소·중학교의 72.8%는 교실배식, 27.2%만 식당배식(2006년, 문부과학성)

5.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 최초 감소 (표1)

○ 2014년 72.7%이었던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 67.4%로 소폭 감소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비율이 전년 대비 6.8%, 1.1%, 3.2%씩 감소하며, 총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은 72.7%에서 67.4%로 5.3% 감소했다.

〈표1〉연도별무상급식실시학교현황

연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
2009	5,852	1,427	24.4	3,110	304	9.8	2,234	81	3.6	11,196	1,812	16.2
2010	5,845	2,123	36.3	3,128	427	13.7	2,255	107	4.7	11,228	2,657	23.7
2011	5,893	4,703	79.8	3,150	803	25.5	2,286	205	9.0	11,329	5,711	50.4
2013	5,942	5,622	94.6	3,180	2,393	75.3	2,326	300	12.9	11,448	8,315	72.6
2014	5,960	5,607	94.1	3,190	2,433	76.3	2,333	311	13.3	11,483	8,351	72.7
2015	6,009	5,247	87.3	3,212	2,320	72.2	2,352	238	10.1	11,573	7,805	67.4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실

○ 경남, 4월부터 무상급식 전면 중단

2014년 전 시군구 726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경남은 4월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22만여명의 학생들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되었다.

중단된 이후 경남의 학부모들은 뿔이 났다. “급식도 교육이다” “공약을 지켜라” “무상급식비지원 경남만 0원이다” 학교앞으로, 도청앞으로, 기초의원과 도의원들에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가결을 철회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글은 경남에 한 학부모가 경남 도의원○○○에게 보낸 문자와 답문자이다.

2015년 4월 2일 오전9:10

잘 주무셨나요?

아침부터 눈물이 나네요. 올 딸래미가 초등 3학년인데요 어제 저한테 엄마 오늘부터 학교에 돈 내고 밥 먹여? 어! 이러니 그럼 나 밥 먹지 말까? 엄마 돈 없잖아! 이라는 겁니다. π○π 한번 보십시오. 10살짜리 꼬맹이도 무상! 유상을 알아요.

왜 천진난만한 애들에게 밥값 걱정을 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뽑은 높으신 분들이 부모나 애들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줄까요?

너무 힘 듭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돌려주세요.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오전 9시49분

이렇게 보내는 문자 공짜 아니죠. 문자 납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세요.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현명한 건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지. 외벌이로 빠듯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키웠기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경남 도의원의 답문자)

“투표를 잘못된 내가 죄인이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경남 도지사가 너무 싫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얼마나 가난한가를 증명하고,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라고 붙여놨네요” “무상급식 예산을 빼돌려 한다는 게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경남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SNS ‘밴드’에 올라온 글들이다.

6.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

○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다. 자의적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생명과 권리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위협받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31조3항)고 선언한다. 즉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상급식은 공짜 밥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본인이 사 먹는 과자 한 봉지, 라면 한 봉지에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년 말에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듯이 학교급식도 차별 없이 국가가 의무급식으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급식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교육’이기 때문이다. ‘급식은 교육’이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다.

○ 친환경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우리농업, 지구환경을 살린다.

친환경급식이란 단순히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류 위주의 서구화된 식단을 지양하고 현미 잡곡밥과 된장국, 채소위주의 전통식단을 제공하여 잃어버린 우리 입맛과 우리의 밥상,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되찾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친환경급식은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와 성장호르몬, 화학첨가물과 유전자조작(GMO)식품, 방사선위험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우리 농업과 지구환경을 살리는 희망의 급식이다.

○ 급식을 기반으로 ‘로컬푸드’와 ‘먹거리 민주주의’를 실현

급식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그 지역 학교에서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소비하는 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맺기, 거리의 축소, 신뢰의 확산’으로 이어져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복지를 보장한다. 급식지원총괄센터는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유통시스템’ 구축해 왔다. 이러한 먹거리 체계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 하고 근거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함께 지구환경도 지킨다. 지역자립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생태계보전,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및 새로운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로컬푸드는 ‘먹거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우리 농업의 희망’이다.

7.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

○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새 학기 3월이면 급식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나는 가난 합니다’라는 증명서로 담임선생님과 첫 대면을 하게 된다. 무상급식이나 감면 급식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소득 증명서와 이혼 증명서는 기본이고 아이가 부모의 실직 증명서나 신용불량 증명서등을 제출해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사정을 시시콜콜 증명해 보여야 한다. 가난이 ‘죄’가 되는 순간이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런 차별밥상을 평등의 밥,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 무상급식으로 학부모의 부담경감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사교육비 증가로 우리사회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2.7%로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전체 국가 평균 0.6%보다 5배 가까이 높다. 반면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GDP의 4.1% 정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무상급식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고 동시에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무상급식은 학부모에 대한 부담경감을 물론이고 교육에 기회균등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게 기여한다.

<표 Ⅲ-2> 무상급식의 재분배효과 (단위: 천원)

소득 분위	가처분소득	보조 (=급식비)	조세	순보조
1	4,295	400	1.78	398.22
2	10,197	400	18.65	381.35
3	16,014	400	49.75	350.26
4	21,661	400	111.33	288.67
5	26,786	400	164.33	235.67
6	32,272	400	228.59	171.41
7	38,356	400	338.74	61.26
8	46,046	400	463.10	-63.10
9	56,741	400	741.43	-341.43
10	85,870	400	1,882.30	-1,482.30
계	-	4,000	4,0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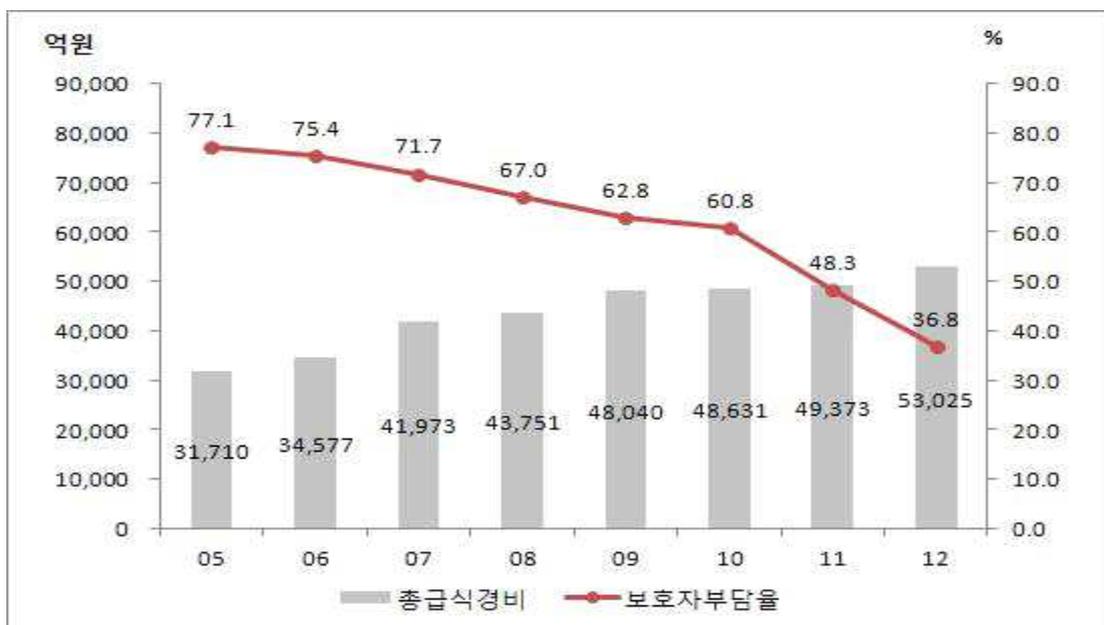
자료: 안현호(2010)

주: 순보조란 급식비에서 조세를 뺀 금액.

위 표에 의하면 증세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득 1분위부터 7분위까지 순보조를 받는 반면, 8분위 이상은 순조세를 내게 된다. 그것은 인구의 70%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이득이 된다.

고소득층에게 월 5만원~10만원의 학교급식비는 그들이 내야할 세금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이익이고 저소득층, 중산층에게는 그들이 내야할 세금에 비해 오히려 학교급식비가 더 큰 혜택이 된다는 것이다.

<표-3>연도별 전국 총 급식 경비 및 보호자 부담률 추이



자료: 교육부 학교급식 실시현황 (2013.2.28. 기준) 주: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포함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과 학부모 부담 경감시키고 있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기본 가치를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가는 근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으로 연간 약 51만 7천원의 학부모 부담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학생들의 소외감, 낙인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 로컬 푸드와 지역 사회 순환경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예산은 그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서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 또한, 농업의 계획생산이 높아져서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고, 생산자 조직이 생산물 가공과 유통을 주도하게 되어 농산물 유통 체계가 생산자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현대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완주와 원주, 횡성 등 몇몇 시군에서는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남은 친환경 농산물은 공공급식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군청구내 식당 등에 공급되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된장, 고추장, 콩나물, 두부, 김치 등 많은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지역 내 생산과 가공시설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생산 가공, 유통되면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2011년 통계청자료를 토대로 1월에서 11월까지 무상급식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0.14% 포인트 끌어 내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물가인하 기여도가 생각보다 크다고 한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경기도등 8개 광역 지자체의 경우 물가하락 기여도는 평균 0.23% 포인트에 이른다.

○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와 주민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과 달리 몇 가지 성과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념이나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먹거리 문제를 다름으로서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불러 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건강과 농민에게 희망을 만들자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중앙이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초조직에서부터 조례제정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수백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과 주민 발의 조례를 만들어냄으로서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제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은 참여한 연대 범위가 매우 넓다.

학부모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농민회, 노동조합, 정당 등이 참여하였고 학교급식을 넘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면서 전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개성이 반영된 정책이 마련되었다.

중앙정부의 시행이 늦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계층별이 아니라 학년별 단계 실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고려하며 개성을 있게 진행되어 중앙정부의 학교급식 정책 변화를 오히려 촉구하는 적극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였다.

다섯째, 민관 공동의 협력을 통한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전국적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급식지원총괄센터는 외부 시민단체 활동가와 지자체와 교육청등이 함께 협력하여 학교급식사업을 지원하는 곳이다. 학부모와 생산농민, 영양사와 교육청, 시청 등 관련부서가 모두 모여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모범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생활자치,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8.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무상급식 실시 근거 마련

국가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도 적극 부합하는 내용으로 더 이상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 되어 초·중·고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자 인권이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 제도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훌륭한 취지를 가

지고 있다. 먹는 것으로 차별받아서 무상교육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무상교육은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라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국가는 의무교육대상자 및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 급식지원총괄센터 설치 의무화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근거 마련

식재료 공급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 책임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는 급식지원총괄센터 운영에 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급식지원총괄센터는 의무규정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40여개 정도 이다. 급식지원총괄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급식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각종 정책/연구/홍보/도농교류 등을 담당해야 하는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총괄센터 설치 의무 규정과 중앙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 직거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얼굴이 있는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목별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선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는 식재료의 질, 안전을 중심에 둔 계약 방법 개선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에 해당 계절·제철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 예외적 위탁규정 조항 삭제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 책임자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탁급식 업체는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할 때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11 . 14

발 의 자 : 우원식, 강동원, 강창일, 김동철,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영주, 김재윤, 김태년, 김현미, 노영민, 노응래, 노회찬, 문병호, 민병두, 박기춘, 박남춘, 박범계,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서기호, 설 훈, 신장용, 안규백, 오영식, 유성엽,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인영, 이찬열, 이재근, 장하나, 전순옥, 정성호, 정진후, 정청래, 조정식, 최규성, 최동익, 최원식, 추미애, 홍영표, 홍의락 의원 (55인)

제안이유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써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근거를 마련하여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경감과 식재료비의 적정사용비율 확보로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함.

주요내용

- 가.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 다.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 유통, 공급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 바. 학교급식에는 급식조달센터를 통하여 조달받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4조).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급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재료로 한 무상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실현 및 교육의 일환으로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급식”이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4.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산물은 원양어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 농산물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 다. 지역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 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 라. 원료의 가공·유통과정에서 방부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첨가제 등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및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변질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제3조(학교급식의 기본원칙)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급식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무상급식의 실시
2.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의 사용
3. 학교의 장의 학교급식 직접 운영
4.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식품·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학교급식을 통한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학교급식의 운영

제5조(학교급식 운영방식)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6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급식시설

제7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13조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제8조(급식지원총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총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지원정책 수립
2. 매년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평가
3. 식재료 생산계획 조정, 품목선정과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
4. 급식조달센터 관리·감독
5. 식재료 생산자에 대한 지원
6. 제철 건강추천식단과 식재료 품질기준안 마련
7. 관할지역 교육청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지원 및 홍보
8.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교육청간의 학교급식 정책·업무 협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급식지원총괄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급식지원총괄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급식조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 유통, 현물공급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급식지원총괄센터에서 급식조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급식조달센터의 유통·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급식조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급식조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계약의 특례)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제11조(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급식 전담 교직원 등 배치) ① 제11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급식에 관한 경비 부담)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 및 급식 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장 학교급식 관리

제14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급식조달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조달받은 친환경우리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급식에는 해당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그 밖에 식재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과 식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 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8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19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식재료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5. 제2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②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식재료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식재료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22조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 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①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식재료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식재료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식재료공급업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재료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재료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토 론 문 1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

김 미 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거리에서 벚꽃이 흩날리더니 어느새 지리산자락에서는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고 있어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자연의 섭리 앞에 고마움과 찬사를 보낸다. 지금 경남의 순수하고 소박한 엄마들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커다란 쓰나미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잔인한 달 4월의 주말에도 경남의 하늘 아래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산새를 연일 뒤덮고 하늘을 울리고 있다. 올해 유난히 봄비가 잦은 것은 학부모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

지난 4월1일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던 첫 날 마침내 학교 마당에 학부모들이 나서 솔단지를 걸고 아이들의 점심을 직접 해서 먹였다. 이 일이 기폭제가 되어 엄마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를 배식하는 일까지 빨간 엄마들의 거침없는 도발적인 행동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5월 어느 하루를 ‘도시락의 날’로 도시락싸기 단체 행동을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스쿨뱅킹을 통해 학부모들의 통장은 난데없는 폭탄 세례에 빈 깡통이다. 급식단가도 큰 학교, 작은 학교 그 폭의 편차가 크다. 실례로 초등학생의 경우 2,500 ~ 3,500원 지역, 학교간 급식단가 편차가 천원에 육박한다. 시,군 간의 편차도 커서 면단위 작은 학교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소위원회 급식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경남에서는 식자재복수검사제를 도입하여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오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학교급식에

지역우수농산물 납품이 되고, 생산자와의 직거래 공동구매 형식도 나름 고민과 실천을 목전에 두어 경남무상급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여겼으며 점진적으로 시 단위 동 지역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해 가던 길목에서 어처구니없게 발목이 잡혀 현 사태까지 오고 있다. 학교급식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무상급식 지원예산 중단 초유의 사태를 접하면서 학부모들의 저항 방법이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고 4월 급식비 납부 이후 더 많은 학부모들이 거리 선전 피켓팅을 하고, 도의원, 시의원들을 만나 면담을 하고 SNS에서 지역간 정보 공유를 극대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가장 엄마다운 시민운동을 담보로 엄마의 힘을 보여 주고 있다.

SNS 통한 자발적인 무상급식 회복 활동 강화(양산지역 : 1700여명 밴드 활동)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보편적 급식, 선별적 급식의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게 된다. 학교급식은 결코 ‘공짜 밥’ 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단순히 밥 한 끼 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엄마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고, 아빠들이 회식 자리에서 마시는 술, 주유소에서 기름 주유하고 결제하는 돈에는 세금이 부과 된다.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으로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자신의 돈을 주는 것 마냥 생색내기 하는 정치인들부터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밥 먹일 수 없다는 저급한 논리, 시대착오적인 발상들이 학부모를 우롱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중단한 도지사는 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하겠다고 한다. 도지사 거수기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정말이지 웃긴다. 무엇보다 학생 1명당 연50만원 카드로 월100만원 가까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소득분위 상위층 자녀들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어떻

게 해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계획을 통지하고 시,군은 이행 의무를 다한다고 졸속 계획안을 세우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졸속으로 서민자녀 교육비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남은 시, 군 조례를 막아내기 위해 시청 앞에서 군청마당에서 항의 집회도 하고, 의원들을 찾아가 학부모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새누리당 도의원, 시,군 의원은 도지사 거수기로 바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도지사 눈치 보느라 바쁘다. 애시당초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도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중 삼중으로 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에 조례를 제정하고 극구 예산을 집행하려는 저의가 도지사 한사람의 야망 때문에 난도질당하고 있다.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동안 하게 되고, 이후 형성된 식습관에 의해 평생건강이 좌우되고, 농업생산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는 지금까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지 학부모로써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은 물론 자국산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장래의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학교급식법이 더 이상 묻혀버리지 않게 이번 임시회의 때 경남에서 비롯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에 국회가 더 이상 냉소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아니며, 더 이상 지체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의무교육 안에서 무상의 범위를 급식, 학습기자재 등으로 확대 해 가야 할 지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우리 스스로 후퇴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초, 중학교 아이들이 의무급식 하기를 바라고 있다. 두 번 다시 경남의 사례와 같은 전처를 밟는 지역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학교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을 통해 제철 음식과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한 소중함, 친구에 대한 양보와 배려, 생산 단계에서 수고하시는 농부에 대한 고마움, 나아가서는 생명의 가치 등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다양하며 이루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급식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오늘날 경남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사례를 보면서 학교급식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법에는 정부의 재원 부담 50%가 담보되어 있다. 더 이상은 예산이 있네, 없네 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없어질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한 재원 분담을 하게 되면 의무급식의 무상 대상은 고등학교까지도 가능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무상급식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제도개선 노력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 공약은 정치인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경쟁시장에 노출되면서 발생했던 급식비리, 식재료 질 저하, 집단식중독사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권리(기회) 만큼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교육 받을 권리와 함께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은 주어졌지만,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할 경우, 학생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과정의 차별 또는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학교급식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대상자인지 비법정대상자인지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자 △시설보호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 의료비특례혜택 대상자의 자녀 △건강보험료 납부액 △담임교사 추천서 등 복잡한 기준과 학부모의 확인, 증명,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 및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가난을 인증 받아야 한다. 대상자를 결정하는 복잡한 기준의 합리성, 공정성 문제도 있고, 대상자 확인, 증명,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높다.



35년 전 1981년에 학교급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학교급식법을 만들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대한민국도 건강해진다. 학교급식에 대한 논쟁을 과거로 되돌리지 말자.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어 강남의 아이들도 받는 무상급식 경남의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는 없어야 한다.

겨울 바람

C F C G7 C

무 상 급 식 해 (밥) 무 상 급 식 해 (밥) 경 상 남 도 대 답 해 (밥) (밥) (밥)

C F C G7 C

무 상 급 식 해 (밥) 무 상 급 식 해 (밥) 경 상 남 도 대 답 해 (밥) (밥) (밥)

G7 F C B Em

아 이 들 밥 그릇 을 이 용 하 지 마

B Em Am Em Am D G7

도 지 사 님 도 대 통 령 님 도 너 무 너 무 알 미 워

C F C G7 C

무 상 급 식 해 (밥) 무 상 급 식 해 (밥) 경 상 남 도 대 답 해 (밥) (밥) (밥)

C F C G7 C

무 상 급 식 해 (밥) 무 상 급 식 해 (밥) 경 상 남 도 대 답 해 (밥) (밥) (밥)



토 론 문 2

“급식은 교육이다” 부천시 사례

정 인 숙

(前 부천 학교급식네트워크 운영위원)

1. “급식은 교육이다” 를 실천하는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급식은 교육이다” 라는 토론회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의무교육과 급식의무론을 연결시키고 있지요. 맞습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급식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있습니다.

- 부천시 직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센터는 2012년 부천시 직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센터가 생기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식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관거버넌스로, 센터 사업의 주체입니다.

센터 운영위원회는 시청, 교육지원청, 식품전문가, 학부모, 시민사회대표, 학교관계자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통해 센터의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할 뿐만 아니라 식재료 현장점검이나 공동구매 평가 위원, 행사 진행 위원 등 실질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급식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급식에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센터는 2013년 ‘학교급식네트워크’를 조직한 뒤, 매년 96개 초·중학교의 급식소위를 중심으로 학교별 학부모 대표단을 구성하여 시에서 발대식(200여 명 참석)을 치르고 운영위원(20여 명)을 뽑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진행하는데, 업체 점검, 급식 모니터링, 식생활 교육, 친환경무상급식 홍보 및 체험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현미급식 30% 먹기를 제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네트워크는 센터가 연도별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할 때 함께 했습니다. 센터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학부모의 참여 및 의식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유·초·중	유·초·중	유·초·중
지원내역	무농약쌀	무농약쌀 친환경김치 무항생제육류	무농약쌀(경기미) 친환경김치 무항생제육류 수산물

- 식생활 교육을 강조합니다.

센터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식생활 교육을 함께 합니다. 운영위, 네트워크 발대식 등 각종 회의와 행사에 앞서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합니다. 유치원·초·중학생 및 학부모와 영양(교)사에게도 식생활 교육을 합니다. 학부모 및 시민들이 식생활 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양성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현재 37명의 식생활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급식을 통해 무상급식의 의의를 다지면서 우리의 생활과 생각이 친환경적이도록 교육합니다.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4년 4월 23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진흥형 방사능급식조례가 부천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식품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자, 센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여론을 확산시켜 조례 제정을 이루었습니다.

2.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화를 위해

- 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부천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착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의 사례를 보면서 과연 안심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부천시의 친환경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부천시-경기도가 합심한 결과입니다. 무상급식은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친환경급식은 부천시와 경기도가 일반식재료 대비 차액을 각각 5:5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김치는 부천시가 온전히 부담합니다. 만약 부천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부정적이라거나, 교육감 및 도지사가 기존의 급식과 반대되는 입장이라면 부천시의 친환경무상급식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학부모들과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화를 위해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급식이 교육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이어야만 합니다. 부천시는 무상급식에 친환경을 더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러자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정도 식품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국가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입니다.

3.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바라며

저는 지금 고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유상급식 대상자이지요. 중학생 학부모일 때에 급식비에 조리사 인건비 및 식당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학부모가 되고 보니, 바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더군요.

아래 표는 저희 학교 급식비 구성입니다.

	급식비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비고
2015년 4월	3,900원	2,630원(67.4%)	938원(24.1%)	332원(8.5%)	인건비 인상
2015년 3월	3,800원	2,630원(69.2%)	838원(22.1%)	332원(8.7%)	

2014년 급식비는 3,600원이었다니까 무려 300원이나 올랐습니다. 몇 달 사이에 8.3% 인상입니다. 당시의 급식비도 2,600원 남짓이었으니 인건비만 오른 셈입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급식의 질은 하락했지요.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친환경 급식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두 끼를 해결합니다. 급식비만 약 월 16만 원입니다. 고등학생이 두 명이면 32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점점 현실화되는 요즘,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의 급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급식비를 더 인상해야 할지,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서 급식비를 동결해야 할지, 고등학교 급식소위 및 운영위원회의 고민이 큼니다. 문제를 해결할 길은 고등학교 급식비에서 식품비를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입니다.

곧 5월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세대별로 각종 기념일이 많습니다. 구호로만 기념하지 말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교육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